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051 발의연월일: 2022. 12. 21.

발 의 자:이병훈·김경만·김철민

김회재 • 박광온 • 박재호

설 훈 · 윤영찬 · 이형석

전재수 · 전혜숙 · 정태호

정필모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하고, 해당 사업지역 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문화재청장에게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규정이 없어 문화재청이 건설공사 시행자로 하여금 문화재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 시행자가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매장문화재 보

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1호 신설).

법률 제 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38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 <신 설></u>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u>1.</u> ~ <u>5.</u> (생 략)	$2.~\sim~6.$ (현행 제 1 호부터 제 5
	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